

이주현 노무사 「핵심정리 사회보험법」
제5판 사용자를 위한 정요표 (2020-04-29)

P37 내용수정

*(기존)

14 고령자등 고용촉진의 지원 - §23, 령§25~29, 규칙§44

고용촉진 장려금	제한 노②	우선지원대상기업이 아닌 기업이 만 29세 이하인 실업자로서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자를 고용하는 경우
-------------	-------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

*(수정)

14 고령자등 고용촉진의 지원 - §23, 령§25~29, 규칙§44

고용촉진 장려금	제한 노②	대규모 기업이 만 29세 이하인 실업자로서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자를 고용하는 경우
-------------	-------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

P38 내용수정

*(기존)

14 고령자등 고용촉진의 지원 - §23, 령§25~29, 규칙§44

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장려금	지원 대상	근로자에게 육아휴직or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(출산전후휴가기간과 중복되는 기간제외) 이상 허용 한 사업주 근로자에게 출산휴가or유사산휴가or육아휴직or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부여 or 허용하고 대체인력 을 고용한 경우로서,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주 + 출,유,육 등의 시작일 전 60일 이 되는 날 이후 새로 대체인력을 고용하여 30일 이상 계속 고용 (또는 임신 중 60일을 초과하여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고 대체인력을 고용한 경우로서 그 근로 자가 근로시간 단축종료에 연이어 출,유,육 등을 시작한 이후에도 같은 대체인력을 30일 이상 계속고용) + 출,유,육 등이 끝난 후 출, 유, 육 등을 사용한 근로자를 30일 이상 계속 고용 (단, 근로자의 자기 사정으로 계속 고용하지 못한 경우는 제외) + 새로 대체인력 고용 전 3개월부터 고용후 1년 까지 고용조정으로 다른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않을 것 (단, 해당 대체인력의 고용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고용관계 종료시까지)	
		육아휴직등 장려금액	고시금액 × 육아휴직 등의 사용기간 개월 수 (단, 장려금중 1개월분은 육아휴직 등을 시작한 날부터 1개월 이후에 지급 하고, 나머지 금액은 육아휴직 등이 끝난 후 6개월 이상 그 근로자를 계속 고용 한 경우 지 급)
	대체인력 지원금	고시금액 × 출,유,육 등을 사용한 기간중 대체인력 사용한 기간 (대체인력사용한 기간에는 출,유,육 사용전 2개월 간의 업무 인수인계기간 포함) 해당 대체인력에게 지급한 임금액 초과 ×	

*(수정)

14 고령자등 고용촉진의 지원 - §23, 령§25~29, 규칙§44

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장려금	지원 대상	근로자에게 육아휴직or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(출산전후휴가기간과 중복되는 기간제외) 이상 허용 한 사업주	
		근로자에게 출산휴가or유사산휴가or육아휴직or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부여 or 허용하고 대체인력 을 고용한 경우로서,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주 + 출,유,육 등의 시작일 전 60일 이 되는 날 이후 새로 대체인력을 고용하여 30일 이상 계속 고용 (또는 임신 중 60일을 초과하여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고 대체인력을 고용한 경우로서 그 근로자가 근로시간 단축종료에 연이어 출,유,육 등을 시작한 이후에도 같은 대체인력을 30일 이상 계속고용) + 새로 대체인력 고용 전 3개월부터 고용후 1년 까지 고용조정으로 다른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않을 것 (단, 해당 대체인력의 고용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고용관계 종료시까지)	
	지원 금액	육아휴직등 장려금액	고시금액 × 육아휴직 등의 사용기간 개월 수 (단, 50%는 지원요건 갖추면 지급하고, 나머지 금액은 육아휴직 등이 끝난 후 6개월 이상 그 근로자를 피보험자로 계속 고용하는 경우에 합산하여 한꺼번에 지급)
		대체인력 지원금	고시금액 × 출,유,육 등을 사용한 기간중 대체인력 사용한 기간 (대체인력사용한 기간에는 출,유,육 사용전 2개월 간의 업무 인수인계기간 포함) (• 지원요건 갖추면 지급 - 업무 인수인계기간 : 대체인력지원금의 100% - 출산전후휴가, 유산·사산휴가, 육아휴직 등의 기간 : 대체인력지원금의 50%) (• 나머지 금액은 해당 사업주가 출산전후휴가, 유산·사산 휴가 또는 육아휴직 등을 사용한 근로자를 출산전후휴가, 유산·사산 휴가 또는 육아휴직 등이 끝난 후 1개월 이상 피보험자로 계속 고용하는 경우(사업주가 해당 근로자의 자기 사정으로 인하여 1개월 이상 계속 고용하지 못한 경우를 포함)에 합산하여 한꺼번에 지급) 해당 대체인력에게 지급한 임금액 초과 ×

P55 내용수정

*(기존)

35 육아휴직 급여 및 육아기 근로시간단축 급여 - §70~73, 령§95~95의2, 령§98, 령§104의2

육아휴직급여액 노㉠㉡	특례	같은 자녀에 대하여 부모가 순차적 으로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두 번째 육아휴직을 한 피보험자의 최초 3개월 의 육아휴직 급여는 월 통상임금 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(월별 상한액 250만원). (단,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의 육아휴직기간이 겹치는 경우에는 특례적용 X())
	육아휴직급여의 75% 는 매월 지급 (최소지급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최소지급액. 일할계산사유발생시 최소지급액의 일할계산액), 나머지 25% 는 육아휴직 종료 후 해당 사업장에 복직하여 6개월 이상 계속 근무 한 경우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 (기간만료로 6개월 이상 계속근무할 수 없는 기간제근로자는 근로계약기간만료로 육아휴직이 종료되거나 사업장 복직후 근로계약기간만료일까지 계속 근무한 경우를 말함)	

*(수정)

육아휴직급여액 노①⑬	특례	같은 자녀	같은 자녀에 대하여 부모가 순차적 으로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두 번째 육아휴직을 한 피보험자의 최초 3개월 의 육아휴직 급여는 월 통상임금 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(월별 상한액 250만원). (단,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의 육아휴직기간이 겹치는 경우에는 특례적용 X)
		한 부모	한부모가족지원법상의 모 또는 부에 해당하는 피보험자가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• 육아휴직 시작일 - 3개월까지 : 육아휴직 시작일 기준 월 통상임금 100%(상한액 250만원) • 육아휴직 4개월 - 6개월까지 : 육아휴직 시작일 기준 월 통상임금의 80%(상한액 150만원) • 육아휴직 7개월 - 종료일까지 : 육아휴직 시작일 기준 월 통상임금의 50%(상한액 120만원)
	육아휴직급여의 75% 는 매월 지급 (최소지급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최소지급액, 일할계산사유발생시 최소지급액의 일할계산액), 나머지 25% 는 육아휴직 종료 후 해당 사업장에 복직하여 6개월 이상 계속 근무 한 경우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		

P229 080번 문제 정답수정

*(기존) 정답○ ⇒ *(수정) ×

| 080 (×)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아닌 기업이 ⇒ 대규모 기업이 |

P230 082번 문제 문제수정

*(기존) ③ 우선지원대상기업이 아닌 기업이 만 29세 이하인 실업자를 고용하는 경우 ()

*(수정) ③ 대규모 기업이 만 29세 이하인 실업자를 고용하는 경우 ()

P230 083번 문제 문제·해설수정

*(기존)

083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장려금은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하인 기간제 근로자의 근로계약기간이나 및 파견근로자의 파견계약기간이 출산전후휴가 기간이나 임신기간 중 또는 육아휴직기간 중에 끝나는 경우 그 근로계약기간이나 파견계약기간이 끝난 즉시 또는 출산 후 15개월 이내에 그 근로자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사업주(사용사업주 포함)에게 지급한다. ()

| 083 (×) 2018.12.31. 개정으로 삭제되어 해당 사항으로는 더 이상 지원되지 않는다. |

*(수정)

083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이 공개 중인 사업주라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허용한 경우에는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을 지급한다. ()

| 083 (×)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이 공개 중인 사업주의 대하여는 지급하지 않는다. |

P230 084번 문제 문제수정

*(기존)

084 피보험자인 근로자에게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허용한 사업주에게는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을 지급하며, 고용안정장려금 중 1개월분에 해당하는 금액은 육아휴직등을 시작한 날부터 1개월 이후에 지급하고, 나머지 금액은 육아휴직등이 끝난 후 6개월 이상 그 근로자를 피보험자로 계속 고용하는 경우에 지급한다. ()

*(수정)

084 피보험자인 근로자에게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허용한 사업주에게는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을 지급하며, 장려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은 지원요건을 갖추면 지급하고, 나머지 금액은 육아휴직등이 끝난 후 6개월 이상 그 근로자를 피보험자로 계속 고용하는 경우에 지급한다. ()

P231 085-②번 문제 정답수정

*(기존) 정답○ ⇒ *(수정) ×

| **085-②** (×) 2020.3.31. 개정시 삭제된 요건이다. |

P231 086번 문제 정답수정

*(기존)

086 대체인력지원금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업 규모별로 고시하는 금액에 출산전후휴가, 유산·사산 휴가 또는 육아휴직 등을 사용한 기간 중 대체인력을 사용한 개월 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, 이때 출산전후휴가등을 사용하기 전 2주 간의 업무 인수인계기간은 육아휴직등을 사용한 기간에 포함한다. ()

| **086** (×) 2주 ⇒ 2개월 |

*(수정)

086 대체인력지원금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업 규모별로 고시하는 금액에 출산전후휴가, 유산·사산 휴가 또는 육아휴직 등을 사용한 기간 중 대체인력을 사용한 개월 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, 이때 출산전후휴가 등을 사용하기 전 3개월의 업무 인수인계기간은 육아휴직 등을 사용한 기간에 포함하며, 해당기간 동안에는 대체인력지원금의 100분의 100을 지급한다. ()

| **086** (×) 3개월 ⇒ 2개월 |

P256 18번 문제 해설수정

*(기존)

3. 우선지원대상기업이 아닌 기업이 만 29세 이하인 실업자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람을 고용하는 경우

*(수정)

3. 대규모 기업이 만 29세 이하인 실업자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람을 고용하는 경우

P258 22번 문제 정답수정

*(기존) 정답 ① ⇒ *(수정) ⑤

22 ⑤ 고보령 §28의4(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)

정답 >> 21 ② 22 ⑤

P262 28번 문제 해설수정

*(기존)

28 ① 육아휴직 시작~3개월까지는 월 통상임금의 100분의 80(상한액 150만원, 최저지급액 70만원), 육아휴직 4개월째부터 종료일까지는 월 통상임금의 100분의 40(상한액 100만원, 최저지급액 50만원)에 해당하는 금액을 월에 휴직한 일수에 따라 일할계산한 금액을 지급액으로 한다.

*(수정)

28 ① 육아휴직 시작~3개월까지는 월 통상임금의 100분의 80(상한액 150만원, 최저지급액 70만원), 육아휴직 4개월째부터 종료일까지는 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(상한액 120만원, 최저지급액 70만원)에 해당하는 금액을 월에 휴직한 일수에 따라 일할계산한 금액을 지급액으로 한다.

P265 33번 문제 문제수정

*(기존)

33 <노무 2014 유사>

甲(50세)은 구직급여를 받다가 소정급여일수 80일을 남겨 두고 재취업하였다. 甲의 소정급여일수는 150일이고, 이직 당시 평균임금은 12만 4천원이었다. 甲이 수령할 수 있는 조기재취업수당은 얼마인가?

*(수정)

33 <노무 2014 유사>

甲(40세)은 구직급여를 받다가 소정급여일수 80일을 남겨 두고 재취업하였다. 甲의 소정급여일수는 150일이고, 이직 당시 평균임금은 12만 4천원이었다. 甲이 수령할 수 있는 조기재취업수당은 얼마인가?